韓-EU FTA의 意義와 推進過程: 評價와 展望(1)

金 興 鍾

韓美 FTA 협상 타결에 이어 한국정부는 유럽聯合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경제권으로서 우리의 2대 교역국이자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보유한 선진국으로서, 한국경제에는 적지 않은 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5차 협상이 끝난 한EU FTA 협상에서는 商品讓許, 非關稅障壁, 原産地 規定이 최대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협상의 종결시점은 이러한 쟁점 분야에 대한 합의 여부와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의 전반적인 형태에 관한 양측의 판단에 달려 있다.

EU와의 FTA는 수출시장의 확대 기회와 경쟁의 격화로 인한 경제체질의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표준, 지재권 등 新通商議題를 미리 점검해 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 序 論

한국정부는 현재 유럽聯合(이하 EU)과 自由貿易協定(이하 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은 양측 간의 쟁점에 대한 분명한 대비를 통해 주요 쟁점이 이미부각되어 있는 상황이며, 합의가 가능한 분야에서는 상당한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하지만 핵심쟁점 분야에서 양측은 이견 차이를 보여 향후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측이 기존의 협상 포지션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韓EU FTA 協商은 2007년 5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어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는, 7월 초 양측이 교환한 기본 양허안을 토대로 협상의 전체적인 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3차 협상부터는 2차 협상에서 나타난 양측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표명과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돌입하였다. 서울과 브뤼셀에서 각각 개최된 4차 및 5차 협상은 협상의 주요 쟁점이 부각되면서 일부 분과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현재 5차까지 진행된 韓EU FTA 協商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재 까지의 협상을 評價하고 이 협상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과 협상 결과에 대해 展望해 보

⁽¹⁾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공개강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한EU FTA가 어떠한 意義를 지니는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발표된 한EU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의 결과도소개한다. 3장은 한국과 EU가 그 동안 이 FTA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4장에서는 현재 협상의 進行狀況을 보고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쟁점과 한국및 EU의 입장을 소개한다. 5장은 結論으로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협상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협상의 방향에 관해 전망하고자 한다.

2. 韓-EU FTA의 意義

EU와의 FTA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경제가 다자적 개방을 통해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달성한다면 이는 국민경제의 후생의 증진에 도움이 될것이다. 하지만 EU와 같은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는, 비록 양자적 무역자유화이지만한국기업의 EU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강화로 인한 시장확대 효과와 함께 국내 산업의 개방을 통한 경쟁의 제고, 이를 통한 構造調整과 資源配分의 最適化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방안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2006년 초부터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은 이 협상의 결과 나타날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국내 비교열위 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 최고의 농업과 서비스업을 갖고 있는 미국이라는 거대경제권과 양자적 시장개방을 시도한다는 것은 분명 한국경제에는 하나의 도전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EU는 미국과 같은 巨大 先進經濟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는 다른 특징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다른 점은 EU가 미국보다 FTA의 肯定的 效果를 더 거둘 수 있는 FTA 상대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먼저 EU는 선진국 중 최근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제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0년 이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수출이 매년 1% 내외의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서유럽 15개국에 대한 수출은 매년 8% 이상 늘어났고 신규회원국 시장으로의 수출은 매년 25%를 상회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수출성장의 동력을 지속시키려면 EU와 폭넓은 양허를 교환하여 EU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EU FTA의 중요한 기대효과는 EU의 關稅率 수준이 높아 FTA의 效果가 크다는 점이다. EU의 平均實行關稅率은 4.2%로서 미국의 3.7%보다 높고,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율 수준이 높아서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단위: %, 억 달러)

209

				(217 707 7 2 17
			자본축적모형	
구분	분	정태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고려 ²⁾
실질 GDP 증가율	한미 + 한EU FTA	0.48	2.83	7.61
	한미 FTA ¹⁾	0.32	1.28	5.97
	한미 + 한EU FTA	30	112	277

17

40

〈表 1〉韓·美+韓·EU FTA의 巨視經濟 效果: GDP, 厚生水準

註: 1) 2007년 4월 30일 발표된 자료(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재인용.

한미 FTA¹⁾

후생수준 증가

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시와 동일한 생산성 증대를 가정함.

관세율은 대부분 10%로 미국의 2.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關稅撤廢의 효과가 훨씬 크다. ⁽²⁾

송백훈 외(2007)는 이러한 經濟的 效果를 일반균형연산모형을 사용하여 추계하였다. 한EU FTA의 개방 정도를 한미 FTA의 수준으로 상정하고 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 한 결과는 〈表 1〉과 같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EU FTA는 단독으로 볼 때 한미 FTA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며 두 FTA의 합은 한미 FTA의 효과를 25~75% 정도 상회하는 추가적인 긍적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表 1〉에서 확인하듯이, 한미 FTA와 한EU FTA의 동시 체결은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누적 기준으로 7.61%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질 GDP는 靜態模型에서 0.48%, 資本蓄積模型에서는 생산성향상 효과를 감안하여 약 7.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한미 FTA 단독으로 0.32% 및 5.97%의 실질 GDP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비교하여 각각 50%와 27% 이상의 추가적인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한·미 FTA와 한·EU FTA의 동시 체결은 雇傭을 약 11만 명~55만 명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미 FTA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5만 명~22만 명의 추가적인 고

⁽²⁾ 이 주장에 대한 주요 반론은 우리 기업이 이미 현지에 많은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관세철 폐의 혜택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수출구조가 5대 수출품(자동차, 반도체, 조선, 통신기기, 전기전자)에 집중되어 있어 EU가 주요 품목의 관세율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지투자 공장의 부품 수출에서 한국기업이 무관세 혜택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관세철폐는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주장은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주장은 협상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후술 참고.

〈表 2〉韓·美 + 韓·EU FTA의 巨視經濟 效果: 雇傭(累積效果)¹)

(단위: 천 명)

7 H	CGE 정태모형	CGE 자본축적모형		
구 분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한·미 + 한·EU FTA	107.5	226.4	552.9	
한·□ FTA ²⁾	57.0	83.2	335.7	

註: 1) 고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효과 자료를 근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산한 잠 정수치임.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07)를 재인용.

용기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이 한EU FTA는 한미 FTA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 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적 분석의 핵심이다.

한EU FTA의 또 다른 의미는 한국과 EU 간 産業構造가 한국과 미국의 경우보다는 더 補完的이어서 이 협상이 한미 FTA보다는 이견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컨대 農業에 대해 EU 측도 상당한 정도의 민감성을 갖고 있어 쌀을 비롯한 기본농산물은 협상의 의제에서 제외하였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公益性을 대변하는 기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쉽게 합의가 되었다. (3)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EU와의 협상이 아직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거나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미리 의제를 조율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EU는 이번 협상에서 전통적인 FTA의 의제인 상품양허 이외에도 환경, 서비스, 통신, 표준, 非關稅障壁, 지리적 표시와 전통적 표시와 같은 知財權 분야 등 다자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합의를 FTA를 통해서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들은 현재 WTO나 다른 분야별 다자간 회의에서 시범적으로 논의되거나 논의될 예정인 의제로서 한EU FTA는 한국으로 하여금 신통상의제의 주요 협력자로서 EU의 의도를 미리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결국 시장 및 교역의 규모, 성장성, 경제적 효과, 민감성, 신통상의제 등을 고려해 볼때 EU와의 FTA는 큰 틀에서 相互 利益을 極大化할 수 있는 市場開放의 한 가지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³⁾ 그러나 이러한 산업 간 보완성은 협상의 쟁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 협상이 수월한 것 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다.

3. 韓-EU FTA의 推進過程

한국과 EU가 서로에 대해서 FTA를 진지하게 고려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FTA 정책에서 EU는 오랫동안 FTA의 대상국으로 고려대상이아니었다. 한국정부가 2003년 8월에 발표한 "FTA 추진 로드맵"에서도 EU는 美國, 中國과함께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에 속해 있었다. 그 당시 한국의 FTA 정책에서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작은 나라들이 협상 대상국으로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협상 전략에서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진 것은 2004년이었다. 결국 FTA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당시 협정이 발효된 칠레와 같은 작은 국가보다는 거대경 제권과 FTA를 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한국경제의 市場開放 및 競爭力 向上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는 미국 등과 함께 FTA의 주요 대상국으로 급부상하였고 한국에서는 한국과 EU와의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4) 2005년 7월 한국은 EU의 인접 경제권인 EFTA(유럽自由貿易聯合)와 FTA를 타결하면서 EU가 아닌 유럽 국가들과의 FTA를 최초로 성사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준비와는 달리 EU는 당시 한국과의 FTA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多者主義를 우선하는 EU의 기본전략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FTA 정책에 대한 집행위 내부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6년에 들어와 이러한 조류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전후에 EU집행위원회는 한국의 EU대표부를 통해서 한EU FTA에 관한 연구 성과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한EU FTA의 추진 가능성은 2006년 5월 16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 한국과 EU 간의 정례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정부는 FTA 협상 시작을 의무적으로 전제하지 않는 예비실무협의를 하기로 EU 측과 합의하여, 동년 7월과 9월 두 차례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하였다.

같은 해 6월과 8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은 무역협회 및 유럽관련학회와 함께 한EU FTA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동 FTA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계와 학계의

⁽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4~05년에 걸쳐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효과에 관한 분석에 관한 용역 연구를 행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한EU FTA의 경 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이라는 최초의 종합 보고서를 공개, 출간하였다.

의견을 청취하였다. 11월 24일 외교통상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와 함께 동 FTA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에는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편, EU 측에서도 한국과의 FTA에 대한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대두되었다. 당초 DDA 협상에 주력하였던 EU는 2006년 여름 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보다 적극적인 FTA 정책 촉진이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대세가 되었다. 2006년 10월 4일에 EU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이 발표한 EU의 新通商政策에서는 한국을 유력한 FTA 추진 후보국으로 거명되기에 이른다. (5)

2007년에 들어와 양국 간 FTA 협상의 시작 일정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한국은 2007년 4월 9일 FTA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5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한EU FTA 협상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EU 측에서는 4월 23일 유럽聯合理事會(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EU집행위원회에 한국과의 FTA 협상지침을 최종적으로 부여한 바, 5월 7일부터 한EU FTA 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4. 韓-EU FTA의 協商 動向

2007년 5월에 개최된 1次 協商에서 양측은 협상의 기대 수준을 천명하였다. 즉,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95%를 10년 이내에 自由化하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100% 完全 開放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방 수준은 한EU FTA가 상품양허 분야에서 韓美 FTA나 韓EFTA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FTA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6)

7월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2次 協商에서는 6월 말과 7월 초에 서로 교환한 양허안을 기초로 협상의 전체적인 틀과 일부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상호 교환한 상품양허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EU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한국 측 양허안에 대한 추가

⁽⁵⁾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발표한 EU의 신통상정책은 유럽에서 새로운 고용기회의 확대와 성장에 통상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현재 WTO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핵심이슈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신흥시장에서 EU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FTA(new generation of bilateral trade agreements)를 통상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European Commission(2006)]. 한국 측에서는 2006~07년 상반기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EU FTA의 농업, 수산업, 원산지규정, 의약품, 서비스·투자,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 관한 분야별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⁶⁾ 한미 FTA에서 상품양허율은 100%였으며, 한-EFTA FTA에서 공산품 양허율은 100%, 상품양 허율은 99.1%였다. 한국이 체결한 FTA 중 상품양허 분야에서 가장 보수적인 FTA는 한-싱가 포르 FTA로서 공산품 양허율은 97.4%였고 상품양허율은 91.6%에 그쳤다.

개방을 요구하였고 한국 측은 8월 말 1차 수정 양허안을 EU 측에 전달하였다. 1차 수정 양허안에서 한국 측은 상품 분야에서 조기철폐(즉시철폐와 3년 이내 철폐)의 비율이 68% 수준의, 보다 개선된 양허안을 전달하였다. 반면, EU가 제출한 양허안에서 조기철폐비율은 79%였다.

3次 協商에서 양측은 4개 분과, 15개 세부분과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였다.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이슈, 그리고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의 네 개 분과가 구성되었으며, 세부분과로 商品 분과에는 상품협정 및 상품양허, 非關稅障壁(NTB), 貿易에 대한 技術障壁(TBT), 위생검역(SPS), 통관/무역원활화, 그리고 원산지의 6개 세부분과가, 서비스/投資분과는 서비스, 투자,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3개 세부분과가 열렸다. 規範이슈에는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의 3개 세부분과가, 마지막으로 紛爭解決/持續可能發展 분과에는 분쟁해결, 투명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3개 세부분과가 운영되었다.

3차 협상을 거치면서 분과별로 협상의 진도에서 차이가 남을 확인한 양측은 서울에서 개최된 4次 協商에서는 3차 협상까지 진통을 겪고 있던 商品讓許, 非關稅障壁(포도주와 증류주, 전자, 자동차, 의약품의 4개 세부분야), 原産地 規定, 서비스 분과 전체, 지재권 분 야만 열리는 기술적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특히 쟁점이 많은 분야만 개최되었던 4차 협상에서 양측은 많은 경우 서로간의 이견을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4차 협상을 마치면서 분명해진 것은 상호간에 새로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한국 측은 특히 문제가 되었던 상품양허 분야에서 좀 더 진전된 안(2차 수정 양허안)을 EU 측에 제시하였으며 EU 측도 경쟁과 일부 비관세장벽 부문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2007년 11월 19일부터 브뤼셀에서 개최된 5次 協商은 2007년으로는 마지막 협상이었다. 이 협상에서 양측은 4개 분과, 16개 세부분과별로 모든 분야에서 협상을 개최하였다. 5차 협상에서는 세부분과로 통신서비스 분야가 추가되었고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기존의 4개 세션에 더하여 한국 측의 요구로 環境 세션이 추가되었다.

5차 협상까지 마친 시점에서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상품양허, 자동차 비관세장벽, 그리고 원산지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商品讓許 분야에서는 한국 측이 1차 수정 양허안보다 훨씬 진전된 2차 수정 양허 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한국 측은 이러한 2차 양허안을 한국 측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국 측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품양허 수준을 EU 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EU 측은 한국 측의 2차 수정 양허안이 자신들의 기존 양허안과 필적하는 수준(comparable)이라고 판

단하고 양측이 여기서 추가로 양허 개선이 가능한지를 Request/Offer 방식으로 점검해 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EU가 상품양허 분야에서 이렇게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농수산물 분야뿐만 아니라 공산품 분야에서도 양국 간에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기본적인 産業別 比較優位에서 한국은 축산과 목제품에서 絶對的인 劣位를, 농산물, 가공식품, 광물성 생산품, 목재펄프, 종이, 시멘트, 유리, 정밀기기 등에서 相對的 劣位를 보이고 있으며, 섬유, 신발,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자동차 및 운송용 차량 등에서 優位를 보이고 있다[김홍종 외(2005)]. EU는 자동차, 정밀기계, 정밀화학, 가공 농산물, 일부 수산물 등에서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데 이 분야는 한국 측에서는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반면 EU는 한국이 EU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 섬유, 가전, 철강 등을 민감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양측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또 하나의 사안은 양허 개선율의 동등성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동등양허를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다. 〈表 3〉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양측 간에는 無關稅 比率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면세품목 비율이 13.3%에 불과한 반면, EU 측은 26.9%에 달하고 있어, EU 측이 無關稅로수입하는 비율이 더 높다. 즉, EU 시장이 더 개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방수준이 차이 나는 초기 조건에서 EU는 同等讓許의 原則을 내세우며 양측이 유사한수준에서 양허율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측은 利益의 均衡 原則에 따라 양허개선율의 동등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양허 개선을 이뤄내는가를 따져서 양허 개선율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7)

EU는 현재 상품양허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의 90% 이상을 7년 이내 철폐라는 가장 장기 개방 일정으로 가져다 놓고 있으며 한국 측은 EU보다 자동차 부문에서 개방도가 높은 안을 제시하면서 EU 측도 이에 따라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商品讓許와 관련하여 또 다른 하나의 쟁점은 한국시장에서 EU가 미국에 불리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KORUS parity의 요구이다. EU의 주장같이 HS 10단위의 모든 품목에서 EU가 미국과 동등한 市場接近의 機會를 갖게 해달라는 것은 배타적인 양자간 협상을 의미하는 FTA의 본래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EU의 산업구조의 차이, 품목별 경쟁력과 한국과의 무역구조 등을 감안한다면 미국과 동등한 양허는

⁽⁷⁾ 한국 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비율이 높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EU의 추가적인 양보가 한국보다 작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EU 측은 무관세비율을 제외하고 양허개선율을 비교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表 3〉韓國과 EU의 關稅構造 比較(2004年)

(단위: %)

		(E11.70)
	한국	EU
양허율	91.5	100
 면세품목 비율	13.3	26.9
비종가세 품목 비율	0.6	9.9
비종가세 품목 비율(no AVEs)	0.6	2.7
관세할당품목 비율	1.7	3.3
- 단순평균관세율	12.8	6.5
농산물(HS 01∼24)	47.9	16.6
비농산물(HS 25~97)	6.6	3.7
농산물(WTO 정의)	52.2	16.5
비농산물(WTO 정의)	6.7(9.8)*	4.1(8.0)*
Domestic tariff spikes**	2.5	5.8
International tariff spikes***	8.9	8.6
Nuisance applied tariff ****	2.7	6.8
관세율 분포의 표준편차	52.0	11.5

註: MFN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함. *는 섬유 및 의류의 평균관세율, **는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의 비율, ***는 15%를 넘는 품목의 비율, ****는 관세율이 0% 초과 2%이하의 품목의 비율임.

資料: WTO TPR Korea와 EC 자료에서 필자 정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EU의 입장에서 KORUS parity는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상품양허와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非關稅障壁(NTBs)이다. EU 협상팀에 따르면 당초 한국과의 FTA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었던 유럽의 산업계를 설득한 가장 중요한 논리가 이번 FTA를 통해서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EU 협상팀은 이번 FTA에서 소위 '韓國의 非關稅障壁'撤廢의 성과를 유럽산업계에 제시해야 할 부담을 갖고 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하여 한국과 EU는 다섯 세션에 걸쳐 협의를 하였다. 먼저 EU 측 요구로 열린 포도주와 증류주(wine & spirit) 분야에서 EU는 傳統的 表示⁽⁸⁾(Traditional Expressions)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한국 측은

⁽⁸⁾ 그랑 크뤼나 샤또(성이 아닌 포도원을 의미하는 경우)와 같이 지명이 아니라도 전통적으로 고유한 의미를 지닌 용어를 전통적 표시라고 한다. EU는 전통적 표시를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 개념이 생소하고 공통적인 국제적 규범이 없으며 지리적 표시보다 광범위하게 지재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전자분야에서 EU는 공급자자기적합성선언(SDoC)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업자가 자기스스로 수출 전에 적합성을 선언하면 이를 수입국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데, 한국 측이 요구하는 시험 성적서를 성실히 제출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출업자가 한번의 test로 적합성 검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環境 분과는 한국 측의 요구로 개설되었는데, EU가 역내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REACH(9)와 관련하여 양측 간 협력분야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10)

非關稅障壁 분야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自動車 非關稅障壁 분야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EU는 당초 EU의 기준과 유사한 UN 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규정을 한국이 국내에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4차 협상에서 일단 EU의 기준을 인정해달라는 선에서 수정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자동차를 한국시장에 수출하려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5차 협상에서 EU는 한국이 적용하고 있는 42개 표준 중 자신들의 표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을 현재의 26개에서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후 검사와 관련한 EU의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한미 FTA 내용을 준용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5차 협상에서 EU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

상품양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측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90% 이상의 품목을 모두 7년 철폐라는 최장 보호 품목으로 묶어 놓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비관세장

⁽⁹⁾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가 도입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서 EU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1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등록 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어느 문방구를 수출하려면 해당 문방구 내에 함유된 인체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함유량을 EU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여 허가 받은 다음에 시판해야 한다.

⁽¹⁰⁾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역량 훈련을 촉진하며, 화학물질의 평가과정에 있어 서로 협력하고, REACH 평가과정에 한국 측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며, 등록물질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¹¹⁾ 수입 제조사 별로 수출물량이 6,500대를 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의 안전기준 적용을 면제해 주고, 수출물량이 6,500대를 초과해도 기준표준 적용을 5년 유예해 주는 안을 한국 측이 제 시하였으나 EU는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2006년 12월 말 현재 한국의 수입차 시장 상황을 보면 BMW가 연간 6,500대 기준을 넘어섰고 Mercedes-Benz도 이에 근접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유럽차 수입이 증가한다면 몇 년 내로 Audi, Volkswagen 등도 연간 수입량 6,500 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벽과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原産地 規定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산지 기준의 조화이다. 원산지 규정은 FTA의 핵심적 이슈인데 아무리 商品讓許率이 높다고 해도 原産地로 인정받지 못하면 FTA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EU가 부품 및 원자재의 역내 조달수 준이 높지만 우리 측은 원자재 수입비율이 높고 해외 생산기지 등을 통한 부품조달 비율이 크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국제분업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原産地 規定에서 한국 측은 세번변경기준(CTH)을 보편적인 원산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EU 측은 附加價值基準을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 및 기계 분야에서 한국은 세번변경기준 혹은 55% 이내 역외산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EU는 부가가치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류와 직물에서는 한국 측이 세번변경/염색 또는 재단봉제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EU 측은 직물의 경우 Yarn Forward, 의류의 경우에는 Fabric Forward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가공 농산물과 수산품에서도 한국 측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EU 측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품목들에 대한 원산지 기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로 되고 있다.

〈表 4〉韓國과 EU의 原產地 基準 比較

품 목	한 국	EU
가공 농산물(Ch.15-24)	세번변경기준(원료수입가)	완전생산기준
가공 수산물(Ch.16)	2단위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직물(Ch.50-60)	CTH/ 염색 혹은 날염	Yarn Forward
의류(Ch.61-62)	재단봉제기준	Fabric Forward(일부 YF)
자동차(Ch.87)	부가가치기준(역외산 65%)	CTH + 부가가치기준 (역외산 40% 미만)
철강, 비철금속(Ch.73-81)	세번변경기준	CTH + 부가가치기준 (역외산 50% 미만)
기계(Ch.84)	세번변경기준 혹은 역외산 55% 사용가	CTH + 부가가치기준 (역외산 30~50%)

5. 結論 및 協商에 대한 評價와 展望

현재 5차까지 진행된 韓EU FTA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또 언제까지 시간을 끌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당초 협상 시작 전에 일부에서 예상한 것처럼 12월이면 협상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은 어긋났다.

현재까지의 협상을 놓고 향후 협상의 방향을 평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더 開放度가 높은 FTA가 될 것인가의 여부이다. 만약 한EU FTA가 한미 FTA 이상의 개방도로 결론이 난다면 한EU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게다가 한미 FTA 서비스분야에서 합의한 대로 MFN 규정이적용된다면 한EU FTA에서 서비스부문의 추가적인 개방은 그대로 한미 FTA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하겠다.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 상품양 허에서는 한미 FTA의 수준인 조기철폐 비율 94%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상당한 EU와의 FTA에서는 상호간에 이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이 예상된다. 이는 한EU FTA가 商品讓許 분야에서 한미 FTA-가 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하지만 상품양허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한미 FTA+가 될 가능성이 높다. 知財權에서 지리적 표시와 의약품 분야, 기타 지재권, 비관세장벽 자동차 부문, 서비스 인력이동, 원산지 역외가공 분야 등에서 한미 FTA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안이 양측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전향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한EU FTA는 한미 FTA+가 될 것이다. 즉 한EU FTA는 대체로 한미 FTA+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게 될 것이다.

둘째, 서비스/投資 분야의 경우 수준 높은 개방을 이끌어 낸다면 이는 향후에 양측이 WTO GATS에서 공통의 입장과 의견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자간 서비스협상에서 한국이 EU와 함께 의제의 선정과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예외조항으로 남아 있는 일부 EU회원국의 수를 얼마나 축소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 집행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공동정책의 범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한 추가협상 조항의 삽입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한EU FTA 협상을 보다 큰 그림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한EU FTA는 EU를 상대로 하는 협상이지만 EU만을 상대로 하는 협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향후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FTA 협상을 하게 되면 한EU FTA는 이 FTA 협상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商品讓許뿐만 아니라

知財權, 非關稅障壁, 投資, 서비스 분야 등에서 폭넓고 균형잡힌 개방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현재 4개 분과 중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持續可能發展 분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분과에서는 貿易과 관련한 勞動과 環境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양측이 다자간 사회협정과 다자간 환경협정에서 공통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민간수준에서도 개최하는 등노동, 환경 이슈에서 양자간 협력의 폭이 넓어지게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開發協力 분야에서 정보교류와 공유가 필요한데 이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이 EU와의 협상은 신통상의제를미리 다뤄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향후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5차 협상을 마친 한EU FTA는 EU가 주변4강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즉 FTA 협상의 과도한 정치화를 지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한EU FTA가 위에서 언급한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 FTA가 나중에 한국이 추진하는 여러 FTA의 전범으로 기능하고 이를 통해한국경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先進的인 經濟構造로 차별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이 향후 동아시아 經濟統合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 가는 데 한EU FTA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유럽팀長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02)3460-1036

팩스: (02)3460-1023

E-mail: hckim@kiep.go.kr

參考文獻

김흥종(2007a): "한EU FTA 협상 개시: 배경과 협상전략,"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7b): "한EU FTA의 파급효과와 협상전략," 한국EU학회/국제통상학회 공동주최

____(2007b). 전EO FIA의 파급효과와 합성전력, 현국EO역회/국제공성력회 등등구최 하계세미나 발표문, 8월 20일.

____(2007c): "한국의 지역통상정책에서 한 EU FTA가 갖는 의미," 한국국제경제학회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문, 10월 26일.

- ____(2007d):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전망," 『京畿論壇』, **9**. **3**, 경기개발연 구원.
- 김홍종·이창수·김균태·강준구·박순찬(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연구 0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노동연구원·산업원구원·농촌경제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정보통 신정책연구원·방송원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금융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한국개 발연구원(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4월 30일.
- 송백훈·김흥종·이준규·서진교(2007): "한·미, 한·EU FTA 동시추진의 경제적 효과," 『오늘의 세계경제』, 7. 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근(2007): 『한국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KIEP 연구자료, 12월.
- 최낙균·강문성·김흥종·박복영·지만수·이경희·김정곤(2005):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정책자료 05-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ropean Commission(2006): Global Europe, November 2007.

(2007): *IP/07/1098*, Brussels, 16 July 2007.